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zip

유턴기업 Summary Guide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진출 및
복귀 全 과정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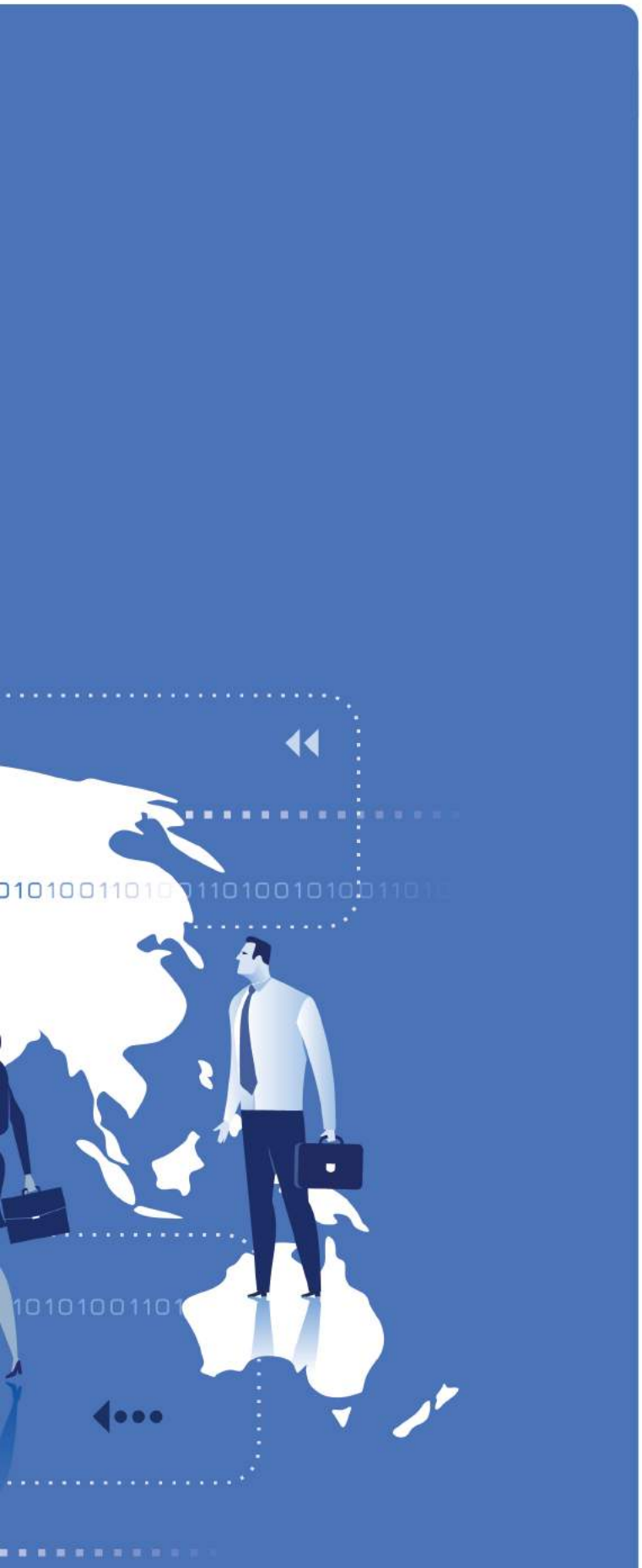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zip

유턴기업 Summary Guide

CONTENTS

신청 · 선정

06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07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09 사후관리

INCENTIVE

12 흐름별 지원사항 MAP
13 유형별 지원사항 MAP
14 투자보조금
18 이전보조금
20 조세감면
22 고용보조금
23 외국인고용
26 구조조정 컨설팅
27 스마트공장
28 입지지원
29 금융지원
30 지식재산권(IP) 지원
31 보증·보험
32 R&D 지원

지원체계

34 지원체계

k o r e a t r a d e - i n v e s t m e n t p r o m o t i o n a g e n c y

Part

01 신청 · 선정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06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07
사후관리 09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선정요건

01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업, 정보통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상) 업종으로,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02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청산 · 양도 · 생산량 축소(25%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 연구개발업의 생산량 축소는 기준경상연구개발비의 10%~25%이상 축소

신청 시 계획도 인정

03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국내모기업(국내모기업이 없는 경우, 국내 신청기업의 소유주)의 실질적 지배자가가 해외사업장을 실질적 지배(지분 30%이상 보유 등)하고 있을 것

04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설 · 증설 투자를 이행할 것
*단, 소분류상 일치하지 않더라도 소재·부품이 동일하거나 생산공정 등이 유사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평가를 통해 인정 가능

신청 시 계획도 인정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조세 · 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신청 시점 유의사항

신청 시점 기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또는 국내사업장 투자를 이미 완료한 기업은 신청기한이 존재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점에, 구조조정"완료"와 국내투자"완료"가 필수 요건이 아니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및 국내사업장 투자 준비중인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 선정 절차

01 신청·접수 — 신청기업 → KOTRA

- 국내 기업 명의로 신청
  -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모기업
    * 국내 모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국내법인(개인사업자 가능) 설립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 원본 우편 송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 e-mail 송부

02 검토·심사 — KOTRA

- 국내복귀기업 자격요건 검토 및 1차 심사
- 해외법인 실체조사
- 심의위원 검토

03 심사보고 — KOTRA → 산업통상자원부

- 심사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04 선정여부결정, 선정확인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기업

- 심사보고서 검토
- 선정 여부 결정 및 통보

선정 후 INCENTIVE 별 지원 절차

-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되더라도 INCENTIVE 지원기관별 추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INCENTIVE 챕터를 참고 바랍니다.
- 국내복귀기업 선정 이전에도 구조조정 컨설팅(비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1 INCENTIVE 별 신청 — 유턴기업 → 담당기관

- 각종 인센티브 신청

02 지원결정 — 담당기관 → 유턴기업

- 인센티브 제공 담당기관 심의 후 지원 결정

신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신청서(스캔) 및 첨부서류	E-mail 송부	reshoring@kotra.or.kr | 문의 : 02-3460-7361~5
신청서(원본)	우편 송부	(06792) 서울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유턴지원팀

사후관리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이행완료 기한

신청 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및 국내사업장 투자 "계획" 제출 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신청서5호) 및 국내사업장 투자(신청서 6호)를 계획으로 제출하신 기업은 선정일 기준으로 해외사업장은 4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는 5년 이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선정일 이전부터 생산량을 축소해 온 기업은 축소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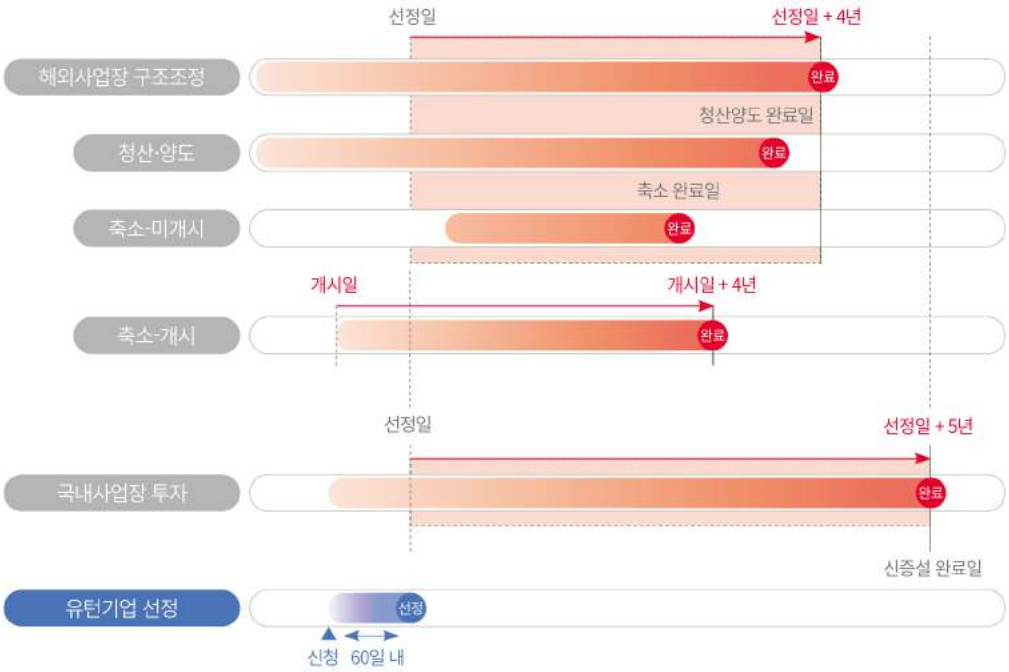

국내복귀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해외사업장 축소로 신청'한 기업과 국내사업장 기 보유한 기업은 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복귀기업은 신·증설 투자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k o r e a t r a d e - i n v e s t m e n t p r o m o t i o n a g e n c y

Part

02 INCENTIVE

흐름별 지원사항 MAP	12
유형별 지원사항 MAP	13
투자보조금	14
이전보조금	18
조세감면	20
고용보조금	22
외국인고용	23
구조조정 컨설팅	26
스마트공장	27
입지지원	28
금융지원	29
지식재산권(IP) 지원	30
보증·보험	31
R&D 지원	32

by "FLOW"
INCENTIVE SUMMARY

EXIT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구조조정 컨설팅 보조금
- 이전 보조금
- 조세감면 (관세)

SET-UP
국내사업장 투자

- 투자 (입지, 설비) 보조금
- 스마트공장 보조금
- 고용 보조금
- 조세감면 (관세)
- 국공유재산 임대지원
- 비자발급 (E-7)
- 산업단지 입주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E-9)

OPERATION
국내사업장 운영

- 조세감면 (법인세)
- R&D 지원
- 금융지원
- IP 지원
- 보증 · 보험

by "TYPE & EFFECT"

INCENTIVE SUMMARY

이번 장에서는 **기업 유형별, 복귀지역별 해당 INCENTIVE**를 우선 살펴보고,
다음 장부터는 아래표의 **보조금~R&D까지 세부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이용 시, 최대 USD 20,000 지급합니다.
- 사용하던 중고 자본재, 사용할 신규 자본재 수입 시 관세 50~100% 감면합니다.
- 이전 운송비, 수수료 등 11~44%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장 투자

- 전국 산업단지 및 지자체 입주를 지원하고, 토지매입비용, 건설투자비용, 기계구입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K-제조업 및 장기적인 경쟁력 배양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Lv.2, 로봇제조 활용혁신 등 스마트 공장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인력 충원 시 고용보조금(중소기업 월60만/1인)과 해외 인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사업장 운영

- 법인세 최장 7년, 50~100% 감면과 시설·운영자금 융자, 보증 보험 우대 등, 금융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R&D를 지원하고, IP(지적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등을 상시 경청하며, 국내복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able>
<tr><th rowspan="3">기업 유형</th><th rowspan="3">복귀 지역</th><th colspan="3">보조금</th><th colspan="2">조세</th><th colspan="3">인력</th><th rowspan="3">구조 조정 컨설팅</th><th rowspan="3">스마트 공장</th><th rowspan="3">입지 지원</th><th rowspan="3">금융 지원</th><th rowspan="3">지적 재산권</th><th rowspan="3">보증·보험 우대</th><th rowspan="3">R&D</th></tr>
<tr><th colspan="2">투자</th><th rowspan="2">이전</th><th rowspan="2">법인 소득세</th><th rowspan="2">관세</th><th rowspan="2">고용 창출 장려금</th><th colspan="2">외국인 고용</th></tr>
<tr><th>입지</th><th>설비</th><th>E-7</th><th>E-9</th></tr>
<tr><td rowspan="3">중소 중견 기업</td><td>비수도권</td><td>○</td><td>○</td><td rowspan="3">○</td><td colspan="2">○</td><td rowspan="3">○</td><td rowspan="6">모두 지원</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6">모두 지원</td></tr>
<tr><td>수도권 (과밀이외)</td><td rowspan="2">X</td><td rowspan="2">△</td><td colspan="2">○</td><td>X</td></tr>
<tr><td>수도권 (과밀이내)</td><td colspan="2">X</td><td>X</td></tr>
<tr><td rowspan="3">대기업</td><td>비수도권</td><td>X</td><td>○</td><td rowspan="3">○</td><td colspan="2">○</td><td rowspan="3">X</td><td rowspan="3">X</td><td rowspan="3">X</td><td rowspan="3">X</td><td>○</td><td rowspan="3">X</td><td rowspan="3">X</td></tr>
<tr><td>수도권 (과밀이외)</td><td rowspan="2">X</td><td rowspan="2">△</td><td colspan="2">○</td><td>X</td></tr>
<tr><td>수도권 (과밀이내)</td><td colspan="2">X</td><td>X</td></tr>
</table>

투자보조금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보조금 심의위원회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 복귀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첨단업종만 해당

* 필수 고용인원 요건은 20.8.31.부로 폐지되었으며, 고용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가감
*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투자보조금 지원(20.11.10.)

지원내용

✓ 기업당 600억원 이내 보조금 지급(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 투자보조금+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 수도권은 기업당 300억원 이내(사업당당 150억원 이내) (20.11.10)

✓ 투자보조금 = 입지 보조금 + 설비 보조금

입지 보조금 = • 토지매입금액 * 대기업 제외 * 수도권 제외

설비 보조금 = • 건설투자비용 • 기계장비구입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X 지원비율 (01 + 02 + 03 + 04)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의 50%(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100%)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01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국비+지방비)
수도권	11%	40%
수도권인접지역	21%	45%
일반지역	24%	65%
지원우대지역	34%	7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4%	75%

02 고용인원 가감비율	-(지원비율X0.7)P ~ +6%P	* 합산하여 최대 10%P
03 투자규모 가산비율	+1%P ~ +4%P	
04 특정업종 가산비율	+2%P	

* 수도권은 특정업종 가산비율 적용 제외

01 복귀지역별 대상지역

지역구분	내용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인접지역	• 강원 : 원주시(단,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지원우대지역) • 충북 : 충주시, 음성군, 청주시, 진천군 • 충남 :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일반지역	• 수도권, 수도권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우대지역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 기업도시개발구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새만금사업지역 • 분양률 50% 이하 국가산업단지(준공+3년 이상 산단) • 전년도 선정실적이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울산 동구, 경남 통영 · 고성 ·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 목포 · 해남, 전북 군산 • 소재부품장비기업중 핵심전략품목 투자기업

02 고용인원 가감비율

신규상시고용인원수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0명 이상 10명 미만	-(지원비율 x 0.7)%p	-(지원비율 x 0.3)%p	-(지원비율 x 0.2)%p
10명 이상 20명 미만	-(지원비율 x 0.6)%p	-(지원비율 x 0.2)%p	-(지원비율 x 0.1)%p
20명 이상 30명 미만	-(지원비율 x 0.5)%p	-(지원비율 x 0.1)%p	-
30명 이상 40명 미만	-(지원비율 x 0.4)%p	-	1%p
40명 이상 50명 미만	-(지원비율 x 0.3)%p	1%p	2%p
50명 이상 60명 미만	-(지원비율 x 0.2)%p	2%p	3%p
60명 이상 70명 미만	-(지원비율 x 0.1)%p	3%p	4%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5%p
80명이상	1%p	5%p	6%p

03 투자규모 가산비율

투자규모	추가지원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p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p	2%p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p	2%p	3%p
1,000억원 이상	2%p	3%p	4%p

04 특정업종 가산비율

업종 (2%P 가산, 아래 업종간 합산 불가)
•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 첨단업종(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 • 여성기업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입주 기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에너지특화기업

*수도권 입주 기업은 가산 배제

신청방법

신청기한

- 투자보조금(설비) 신청 시 : 착공신고일 + 6개월 이내
  투자보조금(입지+설비) 신청 시 : 입지계약체결일 + 1년 이내 / 착공신고일 + 6개월 이내 (빠른 날)
- 신청 시 투자완료일 : 착공신고일 + 3년 이내로 기재하고 이행할 것.
  * 단, 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초과 가능
  * 지자체 검토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일정을 고려하여야 함

신청방법

- 투자지역 지자체와 MOU 체결 (유턴기업 ↔ 지자체)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유턴기업 → 지자체)

작성서류 : 보조금 신청서, 타당성 평가서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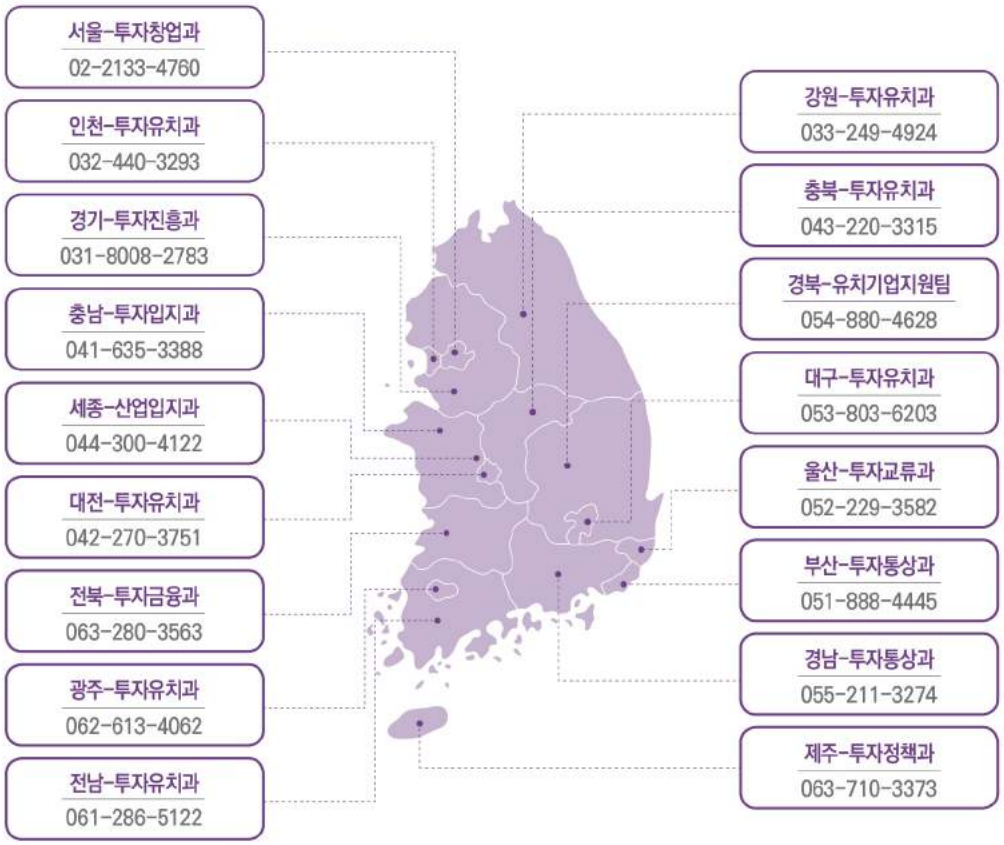
서울-투자창업과
02-2133-4760
인천-투자유치과
032-440-3293
경기-투자진흥과
031-8008-2783
충남-투자입지과
041-635-3388
세종-산업입지과
044-300-4122
대전-투자유치과
042-270-3751
전북-투자금융과
063-280-3563
광주-투자유치과
062-613-4062
전남-투자유치과
061-286-5122
강원-투자유치과
033-249-4924
충북-투자유치과
043-220-3315
경북-유치기업지원팀
054-880-4628
대구-투자유치과
053-803-6203
울산-투자교류과
052-229-3582
부산-투자통상과
051-888-4445
경남-투자통상과
055-211-3274
제주-투자정책과
063-710-3373

이전보조금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내용

✓ 기업당 4억원 이내 이전보조금 지급

✓ 이전보조금 =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비용 X 지원비율

=

- 운송비용
- 해체 및 재설치
- 보험료, 수수료 등

X

지원비율 01

01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국비+지방비)
수도권	11%	40%
수도권인접지역	21%	45%
일반지역	24%	65%
지원우대지역	34%	7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4%	75%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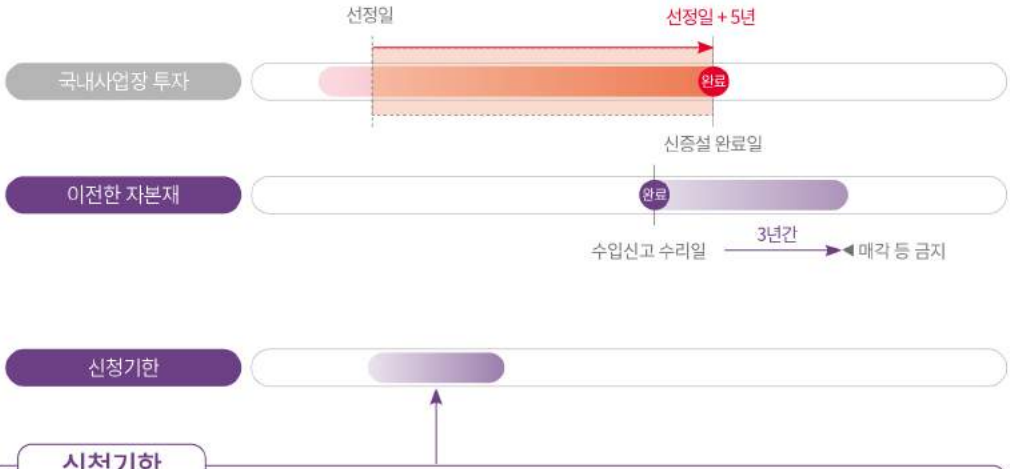

신청기한

- 신·증설 완료기한 내 & 장비 건당 이전비용 최종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유턴기업 → 지자체)

작성서류 : 보조금 신청서

조세감면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 先 사업개시일 → 4년 내 해외구조조정완료 • 先 해외구조조정완료 → 1년내 신증설 완료 • 유턴기업 업종 동일요건 강화 : 세분류까지 동일할 것 • 축소 기준 강화 : 50% 이상 축소*

*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은 20201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감축량에 비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내용

✓ 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으로 복귀하는 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유지하는 기업은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적용
* 국내사업장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사업소득)

• 투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2년간 감면
단,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귀속 과세연도까지 소득발생이 없으면 그 시점부터 과세

* 국내사업장을 "증설"하여 소득 발생한 경우, 아래 증설소득범위만 인정

1)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진행중인 기업

$$\text{증설부분 소득} \times \frac{\text{해외사업장 매출액(증설사업장 개시연도)}}{\text{증설부분 매출액}}$$

2)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완료한 기업

$$\text{증설부분 소득} \times \frac{\text{해외사업장 매출액(양도청산일 직전연도)}}{\text{증설부분 매출액}}$$

3) 해외사업장을 축소완료·축소예정인 기업

$$\text{증설부분 소득} \times \frac{\text{해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금액기준)}}{\text{증설부분 매출액}}$$

✓ 신규 · 중고 자본재 수입관세 100% 감면

* 해외사업장 축소 · 유지하는 기업 : 50% 감면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법인세 • 최초 소득 발생후부터 감면 기간 동안의 법인세 신고 시

관세 •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기계 설비 등) 수입 시

신청방법 — 법인세

❶ 법인세 감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유턴기업 → 관할 세무서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계산서
- 해외사업장 운영 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증빙서류(이미 완료한 경우)

신청방법 — 관세

❶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 유턴기업

❷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유턴기업 → KOTRA → 산업통상자원부

- Invoice, Packing list 첨부

❸ 관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유턴기업 → 관할 세관

- 관세 감면 신청서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첨부
-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검토 확인서 첨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대기업 제외	제한 없음	•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3년 이내 •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내용

✓ 신규 고용 인원 인건비 80% 한도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 100명 한도로 2년간 지급
* 계획서 제출 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보다 증원된 인원 한정

구분	연간 총액 한도	회차별(3개월 단위)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인	180만원/인
중견기업	360만원/인	90만원/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500명 이하,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300명 이하

신청방법

❶ 고용창출장려사업 신청 — 유턴기업 ↔ 관할 고용센터

❷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관할 고용센터

* 승인통보서 받은 날이 속한 달 + 3개월 고용준비기간 소요
(고용창출장려금 대상기간 아님)

❸ 근로자 고용 후 고용신고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❹ 3개월 단위 보조금 신청 및 수령 — 유턴기업 ↔ 관할 고용센터

❺ 평가 및 사후관리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E-7 VISA)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해외사업장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생산관리자에게만 지원 • 해당관리자가 학위가 없는 경우, [기술자격증, 해당분야 수상경력, 언론보도, KOTRA 현지무역관 확인 경력증명서] 中 하나 이상 입증

지원내용

✓ 해외사업장의 외국인 생산관리자에게 외국인 생산관리자 특정활동사증(E-7 VISA) 발급

* 투자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수의 30% 범위 내

신청방법

❶ 고용추천서 신청접수	유턴기업 → KOTRA 해외취업팀
신청 홈페이지 : www.contactkorea.go.kr (골드카드 발급신청)	KOTRA 해외취업팀 02-3460-7388(E-7담당)
❷ 고용관계 사실 확인	KOTRA
❸ 고용추천서 발급	KOTRA → 유턴기업
❹ E-7 VISA 신청	유턴기업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고용허가제(E-9 VISA)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중소 기업	제한 없음	• 제조업 :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 제조업 이외 업종 : 인원 및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아래 열거된 업종만 가능 • 5억원 이상 설비투자 완료 • 지정알선제도 활용 시 : 현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

* 제조업 이외 업종 :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생활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지원내용

✓ 외국인 고용인원(E-9) 쿼터 확대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에게 외국인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제조업 고용허용인원	유턴기업 추가 허용 한도
1인 이상 ~ 5인 이하	5인 이하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인 이하	
11인 이상 ~ 30인 이하	10인 이하	
31인 이상 ~ 50인 이하	12인 이하	
51인 이상 ~ 100인 이하	15인 이하	
101인 이상 ~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 200인 이하	25인 이하	
201인 이상 ~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0인 이상	40인 이하	

✓ 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

* 해외 현지의 숙련근로자를 확인하고, E-9 선발제도(한국어능력시험, 선발포인트제)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외국인 고용인원 쿼터 내에서 선발
* 중국의 경우 4개성(산동성, 하남성, 길림성, 흑룡강성) 출신자만 가능

신청방법

고용허가제 신청

❶ 신규투자(5억원 이상) 확인 신청서 제출	유턴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❷ 신규투자 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유턴기업
❸ 내국인 구인노력(14일)	유턴기업
❹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유턴기업 → 고용센터
❺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	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❻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❼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 → 유턴기업

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 신청

❶ 현지 근로자 명단 제출 (한국어능력시험 원서 접수 전까지)	유턴기업 → KOTRA
❷ 근로자 선발	한국산업인력공단 ↔ 송출기관

• 선발포인트제 : 신규 근로자 선발절차와 동일

❶ 1차 시험 (한국어 능력시험) → (1차 시험 합격자 선발) → ❷ 2차 시험 (기능시험) 필수 + ❸ 2차 시험 (직무능력평가) 해당자만 경력, 훈련, 학력, 자격 → (❶❷❸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

• 특별한국어시험 : 자진 귀국자 선발절차와 동일

❸ 구직자 명부 등록	송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❹ 고용허가 신청	유턴기업 ↔ 관할 고용센터
❺ 지정 알선	유턴기업 ↔ 관할 고용센터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 전 가능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한 없음	• 해외사업장 :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 유턴기업 : 추가조건 없음 • 유턴기업 X : 국내 모기업 有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완료 이전 신청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30%~ 70% 지원(USD 20,000 한도)

* KOTRA 등록 컨설팅회사를 통해 받아야 하며, 기업에서 별도 진행중인 컨설팅회사도 수시 등록이 가능함
* 컨설팅 범위는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관련 범위만 인정

신청방법

❶ 컨설팅계약 체결 컨설팅 계획(지원신청 시 계획으로도 가능)	신청기업 ↔ 컨설팅회사
❷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 KOTRA 관할무역관
제출서류 [유턴기업]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국내복귀기업 선정서 컨설팅 계약 서류	제출서류 [유턴기업 이외]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국내법인에 관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 해외법인에 관한 서류 (위 국내법인 증빙서류와 유사한 해외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서류 일체 등) 컨설팅 계약 서류
❸ 적합성 평가 및 통보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❹ 컨설팅협약 체결	컨설팅회사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❺ 컨설팅 완료보고 및 완료평가	컨설팅회사 ↔ KOTRA 무역관 및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❻ 완료평가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KOTRA 무역관 → 컨설팅회사

스마트공장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한 없음	• 로봇활용, 고도화2 사업 신청시 : 공급기업(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

지원내용

유턴기업 전용사업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 사업비 50%, 5억원 한도

유턴기업 가점사업(3점)

✓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
- 신규구축 : 사업비 50%, 1.5억원 한도
- 고도화 : 사업비 50%, 2억원 한도

✓ 스마트공장 고도화2 : 사업비 50%, 4억원 한도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2 사업 동시 신청 가능, 기업당 최대 9억원 한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❶ 사업공고	→	❷ 신청·접수	→	❸ 서면심사	→	❹ 발표평가
중기부, 진흥원		진흥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

❺ 현장평가	←	❻ 최종 사업비 심의 및 협약체결	←	❼ 공정분석 및 설계	←	❽ 중간점검
평가위원회		진흥원		선정 기업		평가위원회

↓

❾ 로봇도입	→	❿ 시운전 및 활용교육	→	⓫ 결과평가	→	⓬ 결과보고
선정 기업		진흥원(수행기업)		평가위원회		진흥원

입지지원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 · 중견 · 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비수도권	-

지원내용

✓ 국 공유 재산 사용 특례
- 국 · 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및 최장 50년 국 · 공유지 임대가능
- 국내복귀기업에 국 · 공유지 임대료 산정 특례(재산가액 1% 이상) 및 감면(최대 50%)
- 국 · 공유지 매입 시 매입대금 지불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1년 범위 내 납부기일 연기 및 20년 분할 납부 가능)

✓ 산업단지 우선 입주
- 국가 · 일반 ·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복귀기업 우대
-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신청방법

❶ 산업단지 및 개별부지 물색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턴기업 → 관할기관
❷ 유턴기업 신청 및 선정	유턴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❸ 특례 및 우선입주 신청 (유턴기업 선정 전에도 우선 지원 가능)	유턴기업 → 관할기관

금융지원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비수도권	-

지원내용

✓ 시설투자금액 80~90% 대출 지원, 최저 1.5%~(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
- 대출만기 최대 15년, 2024년 말까지 만기 상환하는 범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

*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 적용

✓ 운영자금 저리 대출, 소요자금(수출입금액)의 80~100%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자금대출, 원자재, 설비 등 수입에 필요한 수입자금 대출 등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구분	은행	사업명
시설자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운영자금	수출입은행	수은 유턴기업 특별 프로그램

신청방법

❶ 유턴기업 신청 및 선정 — 유턴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❷ 관할 금융기관 문의 및 신청 — 유턴기업 → 관할기관

지식재산권 지원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구분	지원규모	과제기간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전략	6개 과제 내외	22주 내외 (5.5개월 내외)	6.3백만원	56.7백만원

지원대상 기술분야
IoT, 스마트홈, 환경, 스마트자재, 기타

신청방법

❶ 유턴기업 신청 및 선정 유턴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절차	내용	필요서류
1단계	기업등록 및 회원가입	IP-R&D 사업관리 시스템에 기업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첨부1> 참고
↓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첨부2> 참고
↓			
4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신청과제유형, 과제명, 필수서류 등 누락 여부 최종 확인	-

보증 · 보험 지원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국내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 · 시설자금
- 보증 한도 : 적용 매출액의 1/3~1/2
- 보증 비율 : 90%, 보증료 : 0.2%P 우대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구분	Track1(기술력 우수기업)	Track2(일반기업)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우대지원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5%p 감면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대상자금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추가 인센티브	• 매출액 적용없이 지원하는 운전자금보증금액 확대(같은기업당 2억원까지) • 국내복귀기업을 '우대보증'으로 운용하여 보증심사시 우대	
연계지원	• Scale-up 기업에 대해서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 국내복귀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시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우선지원	

✓ 무역(수출) 보험 · 보증지원

- 보험(보증)료 할인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 후) 보험(보증)료 20% 이내 할인 및 수출신용보증(매입) 0.1%P 차감 할인
- 한도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및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책정가능 한도 1.5배 우대

신청방법

❶ 유턴기업 신청 및 선정 — 유턴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❷ 관할 금융기관 문의 및 신청 — 유턴기업 → 관할기관

R&D 지원

지원조건

유턴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지원내용

산업기술 R&D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하는 R&D(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국내복귀기업에 가점 부여

신청방법

❶ 유턴기업 신청 및 선정	유턴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❷ 신청가능한 사업 검색	유턴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지원사업
❸ 사업 신청	유턴기업 → 관할기관

Part
03 지원체계

지원체계 34

지원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에 의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전반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본사 유턴지원팀 02-3460-7361~5

Reshoring Supporting Network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6792 서울 서초구 헌릉로 13 T. 02 3460 7361~5
발행일 2020 년 11월 표지작품 ⓒcognacgecko